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29 선고 2022가단435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안양지원 안양광역등기소의 1999. 6. 1. 접수 제4937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이영림

별지

청구 원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999년 5월 22일에 새로운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B'의 출시로 안양.군포.의왕지역에 총판매(계약서 4조 1.2항) 조건으로 대리점 계약을 하고 담보물로 별지 부동산을 제공 했습니다.

-그러나 B 본사는 A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군포.의왕등에 추가로 대리점을 모집 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00년 10월 8일 내용증명으로 위반내용의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 조치는 없었습니다.

3. 2000년 7월 24에는 생수자체에 '황토색양금'이 형성되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사의 조치는 냉온수기의 청소를 자주 하라는 조언에 불과했습니다

4. 본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지방 C의 투자와 경영으로 인해 2001년 3월부터 본제품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대리점의 영업과운영이 어렵고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하였습니다.

5. 마지막으로 생수공급받은 것은 2001년 6월 23일 10개, 2001년 6월 26일 7개를 공급받았습니다. 더위가 한참여름 성수기 6월달에 1일 50-60개씩 공급받아야 함에도 실정이 이러 했습니다. 6월 26일후 아무런 대책없이 생수 공급하치장을 의논없이 임의 폐쇄하여 저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본사와 의논중 생수하치장 책임자 D에게 입금시키고 '하치장'을 임의 폐쇄 시킨다는 메모장이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본사와의 미결제금은 2001년 9월 30일까지 709,417원입니다.

7.2013년11월 7일 진주세무서로부터 B의 제3채무자로서의 납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3년 11월27일 709,417원을 진주 세무서에 납부 완료하고 압류를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 어

1.본인은 B과의 채무관계가 없습니다.

-진주세무서에 납부 하였습니다.2013년11월27일.(709,417원)

2.B은 마지막 샘플공급일인 2001년6월23일 이후

21년2개월동안 단 한번도 채무에 대한 변제 요구가 없었습니다

3.B 폐업.2007년11월30일

4.(주)B 법인청산 2017년12월15일

5.위와같은 내용으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표시

[집합건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아파트 G동 제지하층
H호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아파트 G동

도로명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I

벽식라멘조 평스라브지붕

4층 상가

1층 480.0㎡

2층 480.0㎡

3층 480.0㎡

4층 480.0㎡

지층 48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 대 36252.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H호 벽식 라멘조 13.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 대지권 36252.1분의 14.128

